

(사)대한화장품협회

KOREA COSMETIC ASSOCIATION

직인생략

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, 907(금산빌딩) /전화*02-2135-5771 /팩스*02-782-6659
담당부서 : 경영지원팀 부서장 : 임종근 부장 담당자 : 이지연 차장 e-mail: junetenth@kcia.or.kr

대한장협: 제1-26호

시행일자: 2022.01.18.

수신자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: 1차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실시간(웨비나) 교육 실시 안내
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우리 협회는 「화장품법」(법률 제18448호, 2021. 8. 17., 일부개정) 및 「화장품 법령·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」(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-12호, 2020. 2. 25., 타법개정)에 따라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되어 '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등 교육'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
3. 상기 관련, 우리 협회는 불임과 같이 '1차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실시간(웨비나) 교육'을 실시하고자 하오니, 수강을 원하는 교육대상자는 우리 협회 홈페이지(https://kcia.or.kr/home/edu/edu_enter_01.php)에서 정확한 내용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교육 신청 후 실시간웨비나시스템에서 교육 실시됩니다.

※집합교육 대상자의 경우, 코로나-19 상황을 고려하여, 상반기에만 한시적으로 실시간(웨비나) 교육 형태로 참여가 허용되오니 교육 참여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_1차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실시간(웨비나) 교육 실시 안내 1부. 끝.

(사)대한화장품협회장

수신처: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 이후 최초로 교육에 참여하는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, 상시근로자수가 2인 이하로서 직접 제조한 화장비누만을 판매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중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, 제조업자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교육 명령을 받아 6개월 이내 교육을 받아야하는 제조업자·책임판매업자

1차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실시간(웨비나) 교육 실시 안내

□ 교육과정 소개

과정명	목적	교육대상	운영형태
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교육	화장품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책임판매관리자 및	·책임판매관리자로 등록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최초교육을 받아야하는 자	실시간(웨비나) 또는 집합
	제5조제6항에 따른 화장품제조업자, 화장품 책임판매업자,	·상시근로자수가 2인 이하로서 직접 제조한 화장 비누만을 판매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중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	집합 *다만, 코로나-19 상황을 고려하여, 상반기에만 한시적으로 실시간웨비나 교육형태로 참여가 허용됨.
	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에 대하여「화장품법 시행규칙」 제8조제2항에 따른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함	·제조업자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여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으로부터 교육명령을 받아 6개월 이내 교육 을 받아야하는 제조업자·책임판매업자(대표자)	

※법적 근거

- 「화장품법」(법률 제18448호, 2021. 8. 17., 일부개정) 제5조
- 「화장품법시행규칙」(총리령 제1775호, 2021. 12. 28., 일부개정) 제14조
- 「화장품 법령·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」(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-2호, 2022. 1. 14., 타법개정)
-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-34호(2022년 상반기 화장품 분야 법정의무교육(집합) 비대면 시행계획)

□ 교육 프로그램

시간	교과목	세부내용
09:00-10:00	강의실 입장(성명/핸드폰번호/회사명/ 입장코드 기재 후 입장)	
10:00-10:30 [30분]	화장품 정보 바로알기	화장품 관련 유관기관 홈페이지 소개 및 활용방법 등
10:30-12:00 [90분]	화장품법의 이해 (품질, 안전관리 중심)	화장품 법령 체계, 화장품 영업의 종류 및 영업자 준수사 항, 화장품의 품질관리 기준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기준, 화장품의 취급 및 감독·벌칙 등
12:00-13:00	점심시간	
13:00-14:00 [60분]	화장품의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보고	화장품 생산실적 보고 및 원료목록 보고 절차, 방법 등
14:00-15:30 [90분]	화장품 표시·광고 준수사항	화장품의 표시·기재, 광고에 대한 세부 규정, 가이드라인 등
15:30-17:00 [90분]	화장품의 문서관리	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관리해야하는 문서·기록, 예시 등
17:00-	교육평가	10개 문항 출제. 60점(6개 문항) 이상 득점 필요.

※ 교육 로그인/로그아웃 기록 확인과 함께 교육 중, 구두로 수시 출결체크가 진행됩니다.

□ 교육 참여일정

구분	접수기간 및 접수처	실시간온라인 교육 장소	교육시간	모집인원
1차	01월18일(화), 00:00 ~ 01월25일(화), 23:59	02월08일(화), 10:00-17:00	6시간	180명
url	협회교육센터 edu.helpcosmetic.or.kr	웨비나시스템(나우앤나우) kciawb.nownnow.com		

※교육 종료 후 평가 실시.

□ 교육 참여 절차/ 수료기준

교육대상	교육 참여 절차	수료기준
■최초교육자 ■화장비누 취급자(업등록) ■교육명령수령대표자	<p>①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 교육신청 (https://kcia.or.kr/home/edu/edu_enter.php)에서 본인이 해당하는 교육과정/ 교육대상을 선택하여 교육신청하기 버튼 클릭</p> <p>↓</p> <p>② 해당되는 교육과정 선택하여 교육신청 (신청서 작성 및 저장→ 교육비 결제→ 접수 완료)</p> <p>※주의!! 반드시 식약처에 등록된 책임판매관리자,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로 신청서 작성 ※협회 교육담당자가 참가자에게 웨비나 이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의 안내 메일 및 문자를 교육개최 전날 발송함. 협회에서 전송한 이메일 및 문자가 스팸 처리되어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없도록 이메일 및 문자 미수신자는 반드시 협회로 사전 연락 요망.</p> <p>↓</p> <p>③ 교육 당일, 실시간웨비나시스템(kciawb.nownnow.com)웹페이지에서 입장정보 기재 후 입장 → 스트리밍 페이지로 이동</p> <p>※교육 시작 30분 전후로 협회로부터 전달받은 입장코드를 입력하여야 입장 가능함 ※웹페이지 접속 시 사용 브라우저는 [크롬 브라우저] 권장. 1명 1회선 로그인 요망. (익스플로러 버전 문제로 접속/재생 되지 않는 경우 발생될 수 있음)</p> <p>↓</p> <p>④교육 수강(10:00-17:00, 총 6시간)</p> <p>※총 288시간 이상(총 교육시간 중 80% 이상) 수강 시 교육 이수로 인정됨</p> <p>↓</p> <p>⑤수료평가 및 만족도 조사(17:00-17:30)</p> <p>※총 10문항 중 6문항 이상(60점 이상) 맞출 시 수료평가 통과</p> <p>↓</p> <p>⑥실시간교육 종료 5일 후부터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 교육신청→ 수료증 출력</p>	<p>온라인 교육 80%이상 교육이수 + 수료평가 60점 이상 득점</p> <p>▶수료증은 위의 교육 수료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, 실시간교육 수강 완료 확인 이후 5일 이내 온라인 발급됨.</p>

□ 교육 수강비 및 납부방법

-교육 수강비 : 80,000원(비과세)

-납부방법 :

교육대상(교육형태)	납부방법
최초교육자/ 화장비누 취급자(업등록 예정)/ 교육명령수령 대표자(실시간웨бина 또는 집합 교육)	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→ 교육신청(www.kcia.or.kr) 시 납부

※ 교육 시작 이후 수료 조건 미달성으로 환불 요청 시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.

□ 교육참가 시 유의사항(필독)

가. 교육 실시 상황에 따라 모든 교육일정(교과목, 교육일, 개최 횟수, 모집 인원 등)은 변경·운영될 수 있습니다.

나. 실시간웨бина 또는 집합으로 실시하는 '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교육'의 경우, 신청한 교육일정으로 모두 이수한 경우에만 수료로 인정하고 있습니다. 다른 교육과정 또는 신청한 일정과 다른 일정으로 대체가 불가함을 알려 드립니다.

다. 각 회차별로 안내된 접수기간에만 접수할 수 있으며 교육 수요가 많을 경우, 공지한 접수마감일과 관계없이 조기마감될 수 있으며, 법정교육은 유료교육으로 전자결제까지 완료하여야 접수됩니다.

라. 법정교육은 화장품법에서 고시하는 교육대상자가 직접 교육을 신청하고 수료하여야하며 대리참석 이 불가합니다. 미수료 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.

※관련 법령: 화장품법제41조(과태료)제1항제4호

□ 교육관련 문의

문의 내용	연락처
교육관련 법령, 교육대상, 운영 등 교육의 전반적인 사항	경영지원팀 이지연 차장 junetenth@kcia.or.kr
실시간 온라인 시스템 접속 오류, 영상 및 음향 송출 확인	시스템 운영국 02-3149-4811